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36 | 2024.05.20 (2024.05.13~05.19)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5.13~05.19)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지난 3월 26일 제24차 이후 제22대총선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민생토론회가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제25차)로 개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 ②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 차질없이 준비, ③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 ④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생토론회 개최이후 고용노동부는 사후브리핑을 통해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히며,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아울러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은 예정인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노동법원의 설치** 문제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를 감안하여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법원 등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조속히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 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 지원, 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직 훈련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며, 폴리텍은 민간 훈련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신기술 및 기간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공공 훈련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 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주요 내용으로는 ①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 스스로의 엄정한 판별 유도, ②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사업장은 공공 민간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 ③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시행사 시공사 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금과 인센티브 지원, ④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건설사·금융회사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법무부>는 공탁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는 주택 준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합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대상 확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그리고 공동주택 거주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방송수신료를 관리주체가 납부 대행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개하여야 하는 관리비 명세 내역에 방송수신료를 추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방송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 및 관심 제고와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 방송 심의규정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 방송사업자가 외국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한국어로 된 대사를 외국어 자막 등으로 제공,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0인)**」,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규의원 등 11인)**」,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 공공지원 시설물(교육·의료 등)의 건축·임대 등을 포함하여 전략적인 토지공급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의사일정(안)】

법사위에서는 5/21(화) 10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2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관계부처 합동) ... 6
- 정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지침) 1.0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금융위원회) ...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 1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 11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11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3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 13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 14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 14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 1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5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5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0인) ... 1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규의원 등 11인) ... 17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 1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5.13~05.19) [바로가기](#)

- **[해외 규제]** 美 대통령, 對 러시아·이란 추가 제재를 포함한 국가안보패키지법률 서명
- **[방송통신(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부동산]** 후순위 대주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 **[통상관세]**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덤핑·보조금 조사 특징 및 시사점
- **[방송통신(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
- **[소송]**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업체와 위탁거래를 중단하고 그 업무를 자회사로 위탁한 것이 공정 거래법상의 부당거절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받은 사례
- **[중국]** <데이터 경외이전의 촉진과 규범화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데이터 경외이전 규제 완화
- **[공정거래]**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4년 5월 전반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고용노동부)	제2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등	2024-05-14
--------------------	--	------------

제25차 민생토론회에서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됨

민생토론회 이후 고용노동부는 사후브리핑을 통해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 방안을 밝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

-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
- 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 집중
-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

②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 차질없이 준비

-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 시급
-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
- 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
-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

③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

-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 지속
-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제도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나, 청산의지가 없는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우 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

-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
-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노동법원의 설치에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를 감안하여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법원 등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조속히 착수

④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 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 역량 향상 지원
- 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직 훈련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대·중소 상생 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은 생산성을 올리고 근로자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
- 폴리텍은 민간 훈련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신기술 및 기간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공공 훈련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
- 훈련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폴리텍에서 받고 좋은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지침) 1.0 발표

-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국제동향 및 소프트웨어 구성명세서 (SBOM) 활용사례

2024-0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함

※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지침 1.0) : 【요약본】·【전체본】

본 가이드라인은 확산되고 있는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 (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하여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SW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이며, 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임

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되며,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SW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SW 공급망 보안은 전문인력과 SBOM 생성 도구 등 전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으로, 이와 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함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고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임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요령으로는

- ① 대상 SW 개발언어의 호환성, 도구의 분석 알고리즘, 기업의 공급망 특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SBOM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적합한 SBOM 도구 선정
- ② 소스코드 또는 바이너리 분석방식 선택은 기업의 환경에 맞게 하되, 2개 이상의 도구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상용 SBOM 도구 외에도 무료 도구 선택 可)
- ③ 설계-개발-공급(유통)-도입 및 운영-유지보수 등 공급망 각 단계별로 SBOM을 생성·공급(유통)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 ④ 보안취약점 탐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 SBOM DB 구축, NVD(NIST의 보안취약점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동 체계구축 필요
- ⑤ 보안취약점 탐지 시, 신속하게 개발자(부서, 기업 등)에 전파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고객(운영)사에도 적의 조치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2024-05-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함

정부는 '22년 하반기 이후부터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하여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PF-ABCP,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 지원과 함께,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해 왔음

* '22.10월 50조원+α 규모로 조성된 이후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현재 약 94조원 규모로 확대 운영 중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의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건설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의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꾸준히 청취하여 기존의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와 관련한 추가적인 보완 필요사항도 지속 발굴함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 스스로의 엄정한 판별 유도**

- 본PF, 브릿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 실시
-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하여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세분화·구체화하여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여,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자율매각 / 상각,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 유도
-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과 이에 대한 점검·지도 절차를 마련하여 PF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내용 >

현행	개선
연체·부도 여부 등에 대한 단편적인 체크리스트 형태로 선제적·합리적 평가 한계 - 연체, 보증사고, 계속사업 불능·장기지연 여부 등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브릿지)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허가 현황, 본PF미전환 기간, 수익구조(사업비 변동 등),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 - (본PF) 계획 대비 공사, 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구조,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

②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사업장은 공공·민간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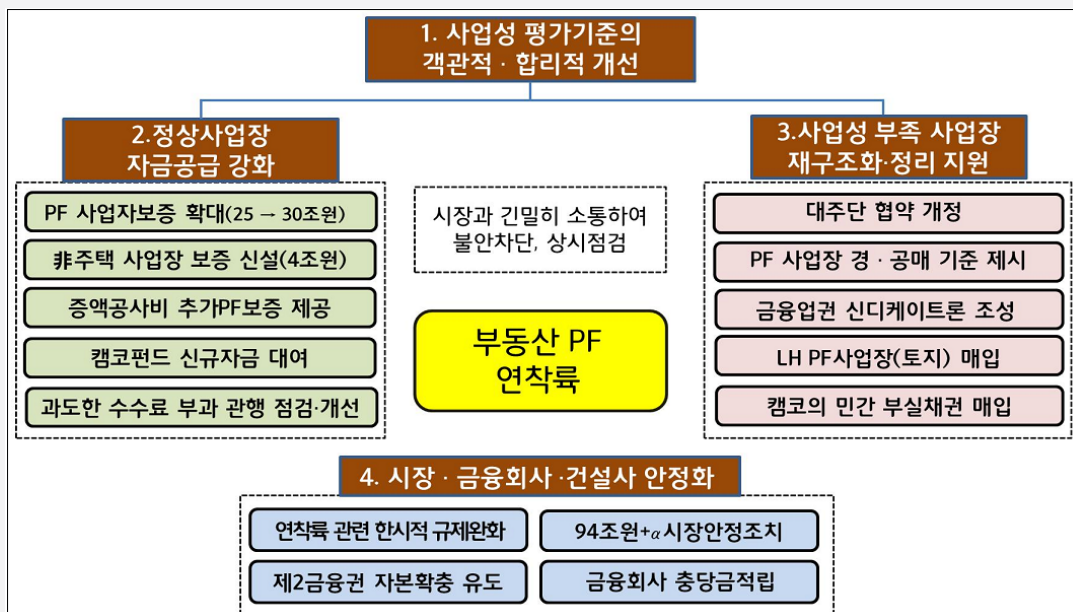
-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시 필요한 자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 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 PF 자금 공급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점검·개선하여 자금공급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의 과도한 부담 완화

③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금과 인센티브 지원

-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2/3이상 동의에서 3/4이상 동의로 변경
 - ▶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개선
 - ▶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을 도입
- 민간·공공이 함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 지원
 - ▶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여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 ▶ LH PF사업장 토지매입(최대 3조원), 캠퍼드의 경·공매를 통한 자산취득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차질없이 추진
 - ▶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퍼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
 - ▶ '23년 캠퍼스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1조원에 더해 금년중에도 새마을금고(+2,000억원)와 저축은행업권(+2,000억원)에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지원

④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건설사·금융회사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

- 금융회사 한시적 규제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구조화·정리 유도
- PF 재구조화·정리로 예상되는 금융회사의 총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도 지속 유도
- 기 마련된 '94조원+α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금융시장과 건설사, 제2금융권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즉시 대응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5-13 시행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정률제로 변경하고,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의 용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변경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

이에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하려는 것임 (제2조제3항제10호, 제44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1항)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5-13 시행 (다만,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
-----	--------------------	--

환경부장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해당 의무운행 기간 내에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회수요율을 20퍼센트로 정하는 한편,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등의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범위에 2009년 9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어린이통학버스와 2006년 전에 제작된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4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79조제1항제1호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5-14 시행
---------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됨

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4조의2 삭제, 제11조제2항제1호, 제23조 신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1-15 시행예정

종전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범위를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판매기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그 영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제21조제5호나목2)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07. ~06.17.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침해사고 대책 이행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60호, 공포 2024. 2. 13., 시행 2024. 8. 14.)됨

이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와 침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여부 점검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신설 (안 제58조의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하려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추가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② 침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점검 방법 및 절차 신설 (안 제58조의3)

- 침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여부 점검을 할 때에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점검목적·방법·기간·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도록 함

③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안 별표9 제2호)

- 과태료의 상한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 침해사고 미신고 과태료와 신설된 침해사고 후속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정비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mailto:saibichimhaedaeu@kisa.go.kr) (전화: 044-202-6463, 팩스: 044-202-6037)

법무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5.16. ~06.25.
-----	-------------	------------------------

현재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는 등 「민법」, 「공탁법」에서 정한 회수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이 없는 동안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갈 위험이 있었음

이에 공탁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안 제5조의3 신설)

-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을 하는 경우, 공탁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 허용

※ 문의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 \(전화: 02-2110-3511, 팩스: 02-2110-0325\)](tel:02-2110-3511)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14.
~06.07.

새로운 광고매체 확산 및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분석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기간 연장 (안 제19조의2제1항)

-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의 사업효과, 안전성 등 검증을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2024.6.30.에서 2027.6.30.으로 3년 연장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전화: 044-205-3544, 팩스: 044-205-8962\)](tel:044-205-3544)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5.13.
~06.24.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정밀검사기관과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농가가 작성·보존해야 하는 기록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지정의 갱신, 지정사항의 변경, 검사업무·절차 등 근거 신설 (안 제37조의8~14)
- ②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지정의 갱신, 지정사항의 변경, 조사지역·조사방법 등 근거 신설 (안 제37조의21~27)

- ③ 과수원 출입, 예방 약제 살포, 묘목 구매내역, 농작업 내역 등 식물재배자가 작성·보존해야 하는 기록 등의 구체화 (안 제37조의28)
- ④ 국립종자원장이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예찰조사지역, 예찰조사원 위촉근거 및 예산지원근거 규정에 국립종자원장 포함 (안 제37조의20)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전화: 044-201-2985, 팩스: 044-868-0734\)](tel:044-201-2985)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13.
~06.24.

당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에 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한 준주택이 제외되어 있었으며, 등록이 필요한 규모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택·준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합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대상 확대 (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종전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대상에 준주택은 제외되어 있었으나, 준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임대관리사업자도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등록의무대상에 포함하고, 임대관리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임대형기숙사, 오피스텔에 한한다) 합산하여 자기관리형은 100세대이상, 위탁관리형은 300세대 이상일 때 등록 의무화하도록 하여 등록의무대상을 명확화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전화: 044-201-4104, 팩스: 044-201-5532\)](tel:044-201-4104)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13.
~05.23.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와 결합하여 관리주체를 통해 징수해 온 방송수신료를 「방송법 시행령」 개정('23.7.12.)에 따라 전기료와 분리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바, 공동주택 거주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방송수신료를 관리주체가 납부 대행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개하여야 하는 관리비 명세 내역에 방송수신료를 추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관리주체가 입주자들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 (안 제23조제3항)
- ②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안 제23조제10항)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82, 팩스: 044-201-5684\)](tel:044-201-3382)

국토교통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5.08.
~06.18.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고압가스배관, 유해화학물질배관, 위험물 제조소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094호, 2024. 1. 2. 공포, 공포즉시 시행)됨

이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추가 (안 별표3제1호 파, 하, 거)
 - 영 제2조 제14호, 제15호, 제16호에 추가된 고압가스배관,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등을 시행규칙 별표3에 추가 반영
- ② 지하안전평가서 보존기간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안 제25조)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 반영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전화: 044-201-3584, 팩스: 044-201-5553\)](tel:044-201-3584)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0인)

2024-05-16 발의

글로벌 경제 협력, 국가간 사회·문화 교류 증대, 우리나라의 경제·문화 선진국 대열 진입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성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됨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구현을 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등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방송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 및 관심 제고와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안 제6조제10항 신설)
- ② 방송 심의규정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33조제2항제8호의2 신설)
- ③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안 제44조제6항 신설)
- ④ 방송사업자가 외국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한국어로 된 대사를 외국어 자막 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69조제13항 신설)
- 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해당 채널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범위에 포함함 (안 제70조제3항 및 제6항)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규의원 등 11인)

2024-05-13 발의

2023년 3월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직접고용 25.2%, 간접고용 3.4%인데 비하여 1만인 이상 기업은 직접고용 11.7%, 간접고용 32.0%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82개 대기업집단도 직접고용 9.9%, 간접고용 30.5%로 간접고용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으로 제작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강제력이 없음

또한,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사내하도급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수급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직전 수급사업주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강제력이 없음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위·수탁 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및 민간대행에 한정된 것이고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23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2024-05-13 발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및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외국인의 정주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의료부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토지공급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여 정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공공지원 시설물(교육·의료 등)을 건축·임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상기의 내용을 담아 전략적인 토지공급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5/21(화) 10:0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요청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5/20(월) 14:00	과거사 진상규명의 퇴행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윤영덕·강민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5/21(화) 07:30	신(新)냉전과 한반도 평화의 길	김한정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5/22(수) 10:00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강은미·용혜인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5/22(수) 14:00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ESG경영전략 세미나 - 기업과 NGO 협력을 중심으로	홍석준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자료집 등	5/21(화) 09:30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개최	국회사무처	
	5/20(월)	「THE 현안」 제11호(2024-11호) 발간 - 2023 한국의 사회지표	국회도서관	
	5/2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45호(2024-7호) 발간 -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		
	5/22(수)	「금주의 서평」 제678호(2024-19호) 발간 - 도서명 : 팬덤의 시대 저자 : 마이클 본드		
	5/23(목)~ 5/24(금)	제22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개최 - AI로 함께하는 미래도서관 : 융합, 연결, 확장		소노벨 변산
	5/21(화)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 분석을 위한 국제감축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	의정관 505호
	5/23(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 96호 발간 - 글로벌 경제에서 자산불평등과 주택정책 방향성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5/14(화) 10:00	ILO 관점에서 본 ESG경영과 임금보호를 위한 제95호 협약 비준의 필요성	김형동 의원실, (사)한국ILO협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5/14(화) 10:00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2차 - 원전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양의원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5/16(목) 10:00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윤창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자료집 등	5/14(화)	「이달의 입법민원」 (2024. 4월호) 발간	국회사무처	
	5/13(월)	「THE 현안」 제10호(2024-10호) 발간 -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미래	국회도서관	
	5/14(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44호(2024-6호) 발간 - 미국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권리보장 입법례		
	5/14(화)	「금주의 서평」 제678호(2024-19호) 발간 - 도서명 : 멀티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 저자 : 마우로 기엔		
	5/14(화)	「NABO Focus」 제71호(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5/13(월)	「이슈와논점」 제2235호 발간 - 미국 FTC 「경업금지 조항 제한 규칙 (Non-Compete Clause Rule)」의 도입 가능성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5/16(목)	「NARS 현안분석」 제320호 발간 -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의과학자 양성 과제		
	5/17(금)	「이슈와논점」 제2236호 발간 -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등 결정의 의미 및 개선 과제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5.13~05.19)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5/13(월)	해외 규제	美 대통령, 對 러시아·이란 추가 제재를 포함한 국가안보패키지법률 서명
5/13(월)	방송통신 (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13(월)	건설/부동산	후순위 대주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5/14(화)	통상관세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덤핑·보조금 조사 특징 및 시사점
5/16(목)	방송통신 (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
5/16(목)	소송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업체와 위탁거래를 중단하고 그 업무를 자회사로 위탁한 것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거절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받은 사례
5/17(금)	중국	<데이터 경외이전의 촉진과 규범화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데이터 경외이전 규제 완화
5/17(금)	공정거래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4년 5월 전반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